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시행 2021. 12.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96호, 2021. 12. 31.,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자원순환연구과), 032-560-75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구분	수수료 계산식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text{수수료} = \text{평가일일단가} \times \text{평가소요일수(Man-Day, 이하 MD)} \times \text{보정계수}^*$ * 매체접촉형재활용유형은 0.8, 비매체접촉형재활용유형은 0.7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평가일일단가는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내용
인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금액으로 한다.
경비	법정복리후생비(21,743원)와 기타경비(인건비에 0.5286을 곱하여 산정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비 고 >

- 출장비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관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평가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별 세부평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

1.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소요일수(MD)
1. 해당 재활용 방식 요약문 검토		0.4
2. 서류 검토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0.4
	○ 일반사항 검토 등	1.2
	○ 주요사항 검토 등	2.0
3. 현장 조사	○ 시료채취	10.0
	○ 폐기물 배출시설 현장조사	10.0
	○ 제조 및 회수공정 현장조사	10.0
	○ 매체접촉형 재활용 대상부지	18.0
	○ 현장조사평가	4.0
4. 재활용환경성평가	○ 유해물질 함량기준 평가 등	16.0
	○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22.0
	○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14.0
	○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12.0
5. 종합평가	○ 내부심의 및 종합평가 등	6.0
6. 평가서 작성 등		6.0

< 비 고 >

- (1)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 평가 시험분석비 및 유해물질 측정분석비는 별표 1로 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 (2) 해당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주변 환경에 대한 모델링평가 및 현장적용성시험 등을 필요로 할 경우 조사하는 매체(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별로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인력 평가일일단가 등을 기초로 하여 실비를 적용한다.
 - (3)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평가소요일수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별표 2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소요일수(MD)
1. 해당 재활용 방식 요약문 검토		0.8
2. 서류 검토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0.8
	○ 일반사항 검토 등	1.4
	○ 주요사항 검토 등	1.4
3. 현장 조사	○ 시료채취	4.5
	○ 폐기물 배출시설 현장조사	4.5
	○ 제조 및 회수과정 현장조사	6.8
	○ 현장조사평가	4.5
4. 재활용환경성평가	○ 환경성평가 기준 제시	6.8
	○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4.5
5. 종합평가	○ 내부심의 및 종합평가 등	4.5
6. 평가서 작성 등		4.5

< 비 고 >

-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 평가 시험분석비 및 유해물질 측정분석비는 별표 1로 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부가비용의 계상)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이를 승인하는 기관 등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평가 범위 등이 바뀐 경우

부칙 <제2021-96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대상폐기물 유해특성 평가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

[별표 2]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규모별 할인 할증률

【별표 1】 대상폐기물 유해특성 평가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

1. 대상폐기물 유해특성 평가

구분		수수료(원)
폭발성	시간/압력장비	124,000
금수성	물과의 반응성 시험장비	103,000
인화성	태그밀폐식 인화점 시험장비	138,000
	펜스키마텐스 인화점 시험장비	163,000
	클리브랜드 인화점 시험장비	144,000
	연소속도 인화점 시험장비	62,000
자연발화성	자연발화성시험장비	31,000
산화성	시간/압력장비	100,000
	연소속도 인화점 시험장비	73,000
부식성	부식속도 시험장비 (수소이온농도 측정수수료 포함)	100,000
생태독성	물벼룩을 이용하는 생태독성 시험장비 (매체접촉형 재활용 시 상향류 투수방식 유출시험의 유출액에 한함)	455,000

< 비 고 >

-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제시된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 (2)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석기관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유해물질 측정분석비

가. 유해물질 함량기준

유해 물질		수수료(원)	비고
카드뮴	cadmium(Cd)	39,100	-
구리	copper(Cu)	39,100	-
비소	arsenic(As)	13,700	-
수은	mercury(Hg)	8,800	-
납	lead(Pb)	39,100	-
6가크로뮴	hexavalent chromium(Cr ⁶⁺)	13,300	-
아연	zinc(Zn)	39,100	-
니켈	nickel(Ni)	39,100	-
안티모니	antimony	39,100	-
바륨	barium	39,100	-
베릴륨	beryllium	39,100	-
셀레늄	selenium	39,100	-
바나듐	vanadium	39,100	-
불소	fluorine	71,100	-
유기인화합물	organophosphorus compounds	25,10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188,000	-
시안	cyanide(CN)	18,200	-
페놀	phenol	56,100	-
벤젠	benzene	26,900	4개 검사항목 전부 검사 받 는 경우 40,600원
톨루엔	toluene	26,900	
에틸벤젠	ethylbenzene	26,900	
크실렌	xylene	26,900	
석유계 총 탄화수소	total petroleum hydrocarbons(TPHs)	62,700	-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TCE)	27,4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PCE)	27,400	-
다환방향족탄화수소-16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16)	271,800	16개 항목 포함

< 비 고 >

-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제시된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 (2)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3) 다환방향족탄화수소-16(PAHs-16) : acenaphthene, acenaphthylene, anthracene, benzo(a)anthracene, benzo(a)pyrene, benzo(b)fluoranthene, benzo(ghi)perylene, benzo(k)fluoranthene, chrysene, dibenzo(a,h)anthracene, fluoranthene, fluorene, indeno(1,2,3-cd)pyrene, naphthalene, phenanthrene, pyrene

나. 유해물질 용출독성 기준

유해 물질		수수료(원)	비고
납	lead(Pb)	15,100	-
구리	copper(Cu)	15,100	-
비소	arsenic(As)	16,900	-
수은	mercury(Hg)	11,800	-
카드뮴	cadmium(Cd)	15,100	-
6가크로뮴	hexavalent chromium(Cr ⁶⁺)	17,700	-
시안	cyanide(CN)	22,000	-
유기인화합물	organophosphorus compounds	29,0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PCE)	28,200	-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TCE)	28,200	-

< 비 고 >

-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제시된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 (2)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3. 상항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분석비

구분		수수료(원)	비고
전처리(상항류 투수방식 용출)		847,000	
카드뮴	cadmium(Cd)	6,100	
비소	arsenic(As)	7,700	
수은	mercury(Hg)	6,600	
납	lead(Pb)	6,100	
크로뮴	chromium(Cr)	6,900	
6가크로뮴	hexavalent chromium(Cr ⁶⁺)	3,900	
아연	zinc(Zn)	6,100	
구리	copper(Cu)	6,100	
셀레늄	selenium(Se)	6,600	
보론	boron(B)	3,100	
스트론튬	strontium(Sr)	6,600	
니켈	nickel(Ni)	6,900	
철	iron(Fe)	6,100	
망간니즈	manganese(Mn)	6,100	
알루미늄	aluminum(Al)	6,100	
바륨	barium(Ba)	6,600	
황산이온	sulfate(SO ₄ ²⁻)	11,800	
염소이온	chloride(Cl ⁻)	3,900	
염화비닐	vinyl chloride	19,600	
시안	cyanide(CN ⁻)	11,300	
플로오르(불소)	fluorine(F ⁻)	9,300	
암모니아성 질소	ammonia nitrogen	2,300	
질산성질소	nitric nitrogen	7,200	
페놀류	phenols	9,300	
유기인화합물	organophosphorus compounds	15,6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125,20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ethylhexyl phthalate	21,400	
에피클로로하이드린	epichlorohydrin	14,800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15,600	
카바릴	carbarv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광유류(노말헥산)	mineral oil	15,400	
수소이온농도	hydrogen ion concentration(pH)	800	
다환방향족탄화수소-16	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16)	271,800	16개 항목 포함

< 비 고 >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제시된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별표 2】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규모별 할인·할증률

구 분	할인·할증률
1.0배(평가대상 기준량 또는 규모)	1.00
2배	1.19
3배	1.36
5배	1.71
7배	2.05
10배	2.57
15배	3.35
20배	4.01
25배	4.59
30배	5.12
35배 이상	5.60

< 비 고 >

1. 할인·할증률 규모는 재활용환경성 평가대상 사업에 투입되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 및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규모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에서 설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비교하여 비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2. 할인·할증률 적용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각 규모 단위의 중간일 경우 할인·할증률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1)(y_2 - y_1)}{x_2 - x_1}$$

x : 해당사업 규모 y : 해당사업 할인·할증률
 x_1 : 작은 규모 y_1 : 작은 할인·할증률
 x_2 : 큰 규모 y_2 : 큰 할인·할증률